

학생인건비 소급(수시)지급 및 반납 후 재지급 불가 안내

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4조(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) 및 과기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현황 현장점검 결과에 근거하여, 학생인건비의 소급(수시)지급 및 반납 후 재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
2022년 1월부터 통합이지바로에 학생인건비 내역이 모두 연계되며 과기부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, 2021년 12월 14일 이후 학생인건비의 소급지급 및 반납은 아래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. 학생인건비는 정기적/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,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오니 연구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< 학생인건비 소급(수시)지급 관련 >

■ 예외적으로 아래 사유에 한해서만 소급지급 가능

- ① 과제협약 지연
- ②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
- ③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
- ④ 불가피한 요인

**** 위 4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빙 제출하여 신청 가능
(단, P과제 잔액 있는 경우 우선 소진 원칙)**

< 학생인건비 비용취소(반납) 관련 >

■ 예외적으로 아래 사유에 한해서만 반납 가능

- ①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·변경·중단·해약
- ②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
- ③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
- ④ 학생연구자가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
**** 학생인건비 반납 후 재지급 신청 불가**